

# 국제중재규칙

(2007. 1. 25. 대법원 승인)



## 목 차

표준중재조항	4
총 칙	5
제 1 조 규칙과 기관	5
제 2 조 정 의	5
제 3 조 적용범위	6
제 4 조 통지 및 서면제출	6
제 5 조 기 한	7
제 6 조 일반규칙 및 해석규칙	8
제 7 조 대 리	8
중재개시	8
제 8 조 중재신청	8
제 9 조 신청에 대한 답변과 반대신청	10
중재관정부	12
제10조 일반 규정	12
제11조 중재인의 수	13
제12조 중재인의 선정	13
제13조 중재인 기피	15
제14조 중재인의 교체 및 해임	16
중재절차	17
제15조 절차일정표	17

제16조	추가서면	17
제17조	신청, 답변 및 반대신청의 변경	18
제18조	중재지	18
제19조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신청	18
제20조	중재의 진행	19
제21조	절차에 관한 규칙	19
제22조	증거	20
제23조	전문가	20
제24조	중재 언어	21
제25조	준거법	21
제26조	심 리	22
제27조	절차의 종료	22
제28조	보전 및 임시적 처분	23
제29조	의무의 해태	23
판 정		24
제30조	의사 결정	24
제31조	판정의 형식과 효력	24
제32조	잠정판정, 중간판정 및 일부판정	25
제33조	중국판정의 기한	25
제34조	화해중재판정	26
제35조	판정의 통지, 기탁 및 집행성	26
제36조	판정의 정정 및 해석	26
제37조	추가판정	27
비 용		27
제38조	중재비용의 납입의무	27
제39조	중재비용의 예납	28

제40조	중재비용의 분담	29
제41조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	29
기 타		30
<hr/>		
제42조	기한의 변경	30
제43조	포 기	30
제44조	면 책	30
제45조	비밀유지	30
부 칙		31
<hr/>		
별표 I 신청요금과 관리요금에 관한 규정		32
<hr/>		
제 1 조	신청요금	32
제 2 조	관리요금	32
별표 II 중재인의 수당과 경비에 관한 규정		33
<hr/>		
제 1 조	중재인의 수당	33
제 2 조	중재인의 경비	35

## 표준중재조항

### 장래의 분쟁

이 계약(비계약적 청구를 포함)과 이 계약의 주후 수정 내용에 따라, 그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계약의 성립, 효력, 구속력, 해석, 이행, 위반 또는 해지 등 포함)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에 회부하여 중재에 의하여 중국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이 표준중재조항의 일부로 본다.

중재인의 수 : [ 1 / 3 ]

중재지 : [ 도시 / 국가 ]

중재에 사용될 언어 : [ 언어 ]

### 현존하는 분쟁

아래에 서명한 당사자들은 다음의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에 회부하여 중국적으로 해결할 것을 이 서면으로써 합의한다.

[분쟁의 간략한 설명]

중재인의 수 : [ 1 / 3 ]

중재지 : [ 도시 / 국가 ]

중재에 사용될 언어 : [ 언어 ]

## 총 칙

### 제 1 조 규칙과 기관

---

① 이 규칙은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이라 한다)의 국제중재규칙이라 하고, 중재원 국제중재규칙(이하 “이 규칙”이라 한다)이라 약칭한다.

② 이 규칙에 따라 사무국이 처리하여야 할 중재 절차에 관한 사무는 중재원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지명된 중재서기가 수행한다.

③ 중재원은 자체 선정한 위원으로 구성된 국제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규칙 제13조 및 제14조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적절하게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제 2 조 정 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재판정부”에는 1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와 복수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모두 포함된다.
2. “신청인”에는 1인 또는 복수의 신청인이 모두 포함되며, “피신청인”에는 1인 또는 복수의 피신청인이 모두 포함된다.
3. “판정”에는 잠정판정, 중간판정, 일부판정 및 종국판정이 있다.

4. “국제중재”라 함은 중재절차의 당사자들이 중재합의를 할 당시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갖고 있거나, 다음 장소 중의 한 곳이 당사자들의 영업소 소재지 이외의 국가에 위치한 경우를 말한다.
- (a) 당사자간의 중재합의에 따라 정해진 중재지
  - (b) 계약상 의무의 실질적인 부분이 이행되는 장소 또는 분쟁의 대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장소

### 제 3 조 적용범위

---

- ①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이 규칙에 따라 국제중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이 규칙이 중재합의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 이 규칙에 따라 중재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은 서면으로 이 규칙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이 규칙이 당해 중재에 적용되는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강행법규가 우선한다.

### 제 4 조 통지 및 서면제출

---

- ① 당사자는 중재서류와 기타 서면 및 첨부서류를 제출함에 있어서 각 당사자에게 1부, 각 중재인에게 1부 및 사무국에 1부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모든 교신은 그 사본 1부를 사무국으로 보내야 한다.
- ② 사무국 및 중재판정부로부터의 모든 통지와 교신은, 수신인인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최후에

알려진 주소로 한다. 이러한 통지나 교신은 수령증을 받는 교부송달, 등기우편, 택배, 팩스, 텔렉스, 전신 또는 송신기록이 남는 다른 교신수단으로 할 수 있다.

③ 통지 또는 교신은 당사자 자신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령한 날, 위 제2항에 따라 행하여진 경우에는 이를 수령하였을 날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중재판정부가 구성될 때까지는 당사자 상호 간, 각 당사자와 중재인 간의 모든 교신은 사무국을 경유한다.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이후에는, 중재판정부가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구두, 서면을 불문한 모든 교신은 당사자 상호 간, 각 당사자와 중재판정부 사이에 직접 이루어진다. 서면교신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동시에 사무국에 송부한다.

⑤ 사무국이 중재판정부를 대신하여 일방 당사자에게 서면 교신을 보내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 전원에게도 사본을 송부한다. 일방 당사자가 사무국에 교신을 보내는 경우에는 나머지 각 당사자와 각 중재인의 수만큼의 사본을 첨부한다. 사무국은 나머지 각 당사자와 중재판정부에 그 사본을 송부한다.

#### 제5조 기 한

---

① 기한의 기산점을 정함에 있어서 통지 또는 기타 교신은 이 규칙 제4조에 따라 송달된 일자에 수령된 것으로 본다.

② 기한의 준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통지 또는 기타 교신이 이 규칙 제4조에 따라 기한만료일 또는 그 전에 발송된 경우 그 통지 또는 교신은 기한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칙에 따라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통지 또는 기타 교신이 도달한 익일로부터 기산한다. 그러한 기간의 말일이 수령인의 주소지 또는 영업지에서 공휴일 또는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은 그 이후의 최초 영업일에 만료한다. 기간 중의 공휴일 또는 휴무일은 기간에 산입된다.

#### 제 6 조 일반규칙 및 해석규칙

---

이 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모든 사항에 대하여 사무국과 중재판정부는 이 규칙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판정이 법률상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 7 조 대 리

---

이 규칙에 따른 절차에서 당사자는 자신이 선정한 자로 하여금 자신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중재판정부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대리권을 증명하여야 한다.

## 중재개시

#### 제 8 조 중재신청

---

① 이 규칙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사무국에 중재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무국은 신청서의 접수사실과 접수일자를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재절차 개시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서가 사무국에 접수된 일자로 한다.

③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 또는 첨부되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팩스번호, 전화번호
2. 신청인에 대한 기재 - 신청인이 회사인 경우 그 설립지와 회사 형태, 개인인 경우 국적과 주된 거주지 또는 근무지
3. 중재 상대방(피신청인)의 성명, 주소,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하는 전화번호와 팩스번호
4. 청구의 원인이 된 분쟁의 성격과 상황에 관한 기술
5. 중재 신청취지
6. 중재절차에 관하여 당사자가 이미 합의한 사항 또는 신청인이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중재지, 중재언어, 준거법, 중재인의 수, 중재인의 자격과 성명 등)에 대한 기술
7. 중재합의에서 당사자의 중재인 선정을 요하는 경우, 신청인이 선정하는 중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8. 신청인이 원용한 서면 중재조항 또는 별도의 서면 중재합의 등 관련 계약서
9. 대리인의 성명, 주소, 팩스번호, 전화번호

④ 신청인은 신청서와 함께 이 규칙 제4조에서 요구하는 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 당시 시행 중인 별표 I(신청요금과 관리요금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신청요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이 요건 중 하나라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사무국은 신청인의 요건 준수를 위한 기한을 정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그 기한 내에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추후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일한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사무국은 충분한 수의 신청서 사본이 제출되고 필요한 예납이 이루어진 경우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사본을 피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일방 당사자가 이 규칙에 의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계류 중인 중재의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일방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새로운 신청의 성격, 중재의 단계, 기타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 계류 중인 절차에 새로운 신청서 상의 청구를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제 9 조 신청에 대한 답변과 반대신청

---

① 피신청인은 사무국으로부터 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피신청인의 성명, 주소, 팩스번호, 전화번호
2. 피신청인에 대한 기재 - 피신청인이 회사인 경우 그 설립지와 회사 형태, 개인인 경우 국적과 주된 거주지 또는 근무지

3.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인정여부 및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취지에 대한 답변
4. 신청인의 제안 및 이 규칙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중재인의 수와 선정에 관한 의견, 필요한 경우 중재인의 선정
5. 중재지, 준거법 및 중재언어에 대한 의견
6. 중재합의에서 당사자의 중재인 선정을 요하는 경우, 피신청인이 선정하는 중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7. 대리인의 성명, 주소, 팩스번호, 전화번호

② 피신청인이, 중재인의 수 및 중재인 선정에 관한 의견 또는 이 규칙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중재인의 선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사무국은 답변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피신청인이 위 사항의 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답변서 제출기한은 연장되지 않는다.

③ 답변서는 이 규칙 제4조에 규정된 수의 사본을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피신청인의 반대신청은 답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또는 중재판정부가 정황을 고려하여 그 지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중재절차에서 제출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다만, 반대신청의 원인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중재합의에 기초하여야 한다.

1. 반대신청의 원인이 된 분쟁의 성질과 상황에 대한 기술

2. 반대신청취지(가능한 한도 내에서 반대청구금액 포함)

⑤ 답변의 취지 및 이유가 반대신청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피신청인에게 그 부분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반대신청을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 답변서 제출 해태의 경우에도 피신청인은 중재절차에서 청구를 부인하거나 반대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재합의에서 당사자의 중재인 선정을 요구하는 경우,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거나 아예 선정하지 않으면 해당 당사자의 중재인 선정권은 종국적으로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 중재판정부

### 제10조 일반 규정

① 이 규칙에 따른 중재인들은 항상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중재인으로 선정된 자는 선정을 수락하기에 앞서, 자신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하여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사무국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중재절차진행 중이라도 그러한 의심을 야기할만한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면

중재인은 이를 당사자와 사무국에 서면으로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③ 중재인의 선정, 교체, 해임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사무국의 결정은 종국적이며 불복할 수 없다.

#### 제11조 중재인의 수

---

이 규칙에 따른 중재사건은 단독 중재인 또는 3인의 중재인의 심리로 결정한다. 중재인의 수에 관하여 당사자들간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단독 중재인이 선정된다. 그러나 어느 쪽 당사자라도 신청서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국에 3인의 중재인에 의할 것을 신청하면, 사무국이 분쟁의 규모, 복잡성 및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3인의 중재인을 지명한다.

#### 제12조 중재인의 선정

---

① 분쟁이 단독 중재인에게 회부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피신청인이 중재신청서를 수령한 날 또는 이 규칙 제11조에 따라 사무국이 단독 중재인에 의할 것임을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하여 단독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위와 같이 정해진 기간 또는 사무국이 연장을 허용한 기간 내에 합동으로 단독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무국이 단독 중재인을 선정한다.

② 분쟁이 3인 중재인에게 회부되는 경우, 신청인은 중재신청서에서 또는 사무국이 허용한 연장기간

내에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피신청인은 답변서에서 또는 사무국이 허용한 연장기간 내에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한다. 일방 당사자가 위 기한 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무국이 이를 선정한다. 양 당사자에 의해 중재인 2인이 선정되면 2인의 중재인이 합의하여 제3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그가 중재판정부의 의장이 된다. 2인 중재인이 두 번째 중재인의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장으로 활동할 제3의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면 사무국이 이를 선정한다.

③ 중재판정부가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경우,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복수인 때에는, 복수의 신청인들 또는 복수의 피신청인들 공동으로 이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중재인을 각각 선정한다. 그러한 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당사자들이 중재판정부의 구성 방법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무국이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중재인 전원을 선정하며 그 중 1인을 의장으로 지명한다.

④ 중재인 선정시 사무국은 선정될 중재인의 경험, 일정, 국적 및 거주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당사자 일방이 요청하는 경우 사무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들과 국적이 다른 자를 단독 중재인이나 중재판정부의 의장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⑤ 이 규칙에 따라 중재인 전원이 선정된 경우, 사무국은 쌍방 당사자 및 중재인 모두에게 중재인 전원의 성명, 주소 및 직업을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조 중재인 기피

---

①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중재인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중재인의 선정에 참여한 당사자는 선정 이후에 알게 된 사유를 근거로 하여서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재인의 공정성 및 독립성 결여 또는 기타의 사유에 의한 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은 그 기피의 원인이 된 사유와 사실을 기술한 서면을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당해 사건의 각 중재인 및 각 당사자에게 이 서면의 사본을 전달하여야 한다.

③ 기피신청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일방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사실을 통지 받은 날 또는 해당 당사자가 기피의 원인이 된 사유와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기피의 대상이 된 중재인, 상대방 당사자 및 중재판정부의 다른 구성원들은 기피신청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피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밝힐 수 있다. 그러한 의견은 사무국, 각 당사자와 각 중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일방 당사자가 중재인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기피에 동의할 수 있고, 이러한 동의가 있는 경우 중재인은 사임하여야 한다. 그러한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기피 대상인 중재인은 자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위의 경우에 사임하였다고 하여 기피 이유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상대방 당사자가 기피신청에

동의하지 않거나 기피 대상인 중재인이 사임하지 않는 경우, 사무국은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14조 중재인의 교체 및 해임

---

① 중재인은 사망, 사무국의 중재인 사임 수리, 사무국의 기피 결정 또는 중재의 모든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교체되어야 한다.

② 사무국은 중재인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임무수행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경우 또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재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③ 중재절차 진행 중에 중재인이 교체되는 경우, 새로운 중재인은 교체된 중재인의 선정에 적용되었던 이 규칙 제12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선정한다.

④ 중재인이 교체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중재판정부가 재구성되기 이전의 절차를 반복할 것인지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한다.

⑤ 중재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는 사무국은 사망, 사임 또는 해임된 중재인을 교체하지 않고 나머지 중재인들로 하여금 중재를 완료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사무국은 그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 나머지 중재인 및 당사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결정에 필요하다고 보는 기타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 중재절차

### 제15조 절차일정표

---

①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중재 진행을 위한 잠정적인 일정표를 별도의 서면으로 작성하여 중재판정부의 구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국과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재판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속 절차를 준비하고 그 일정을 정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답변서 제출 이후에 준비회의를 열 수 있다.

### 제16조 추가서면

---

①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중재신청서와 답변서(반대신청서)에 대한 추가서면을 제출하도록 재량에 따라 허가하거나 요구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해당서면의 제출을 위한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추가서면 제출을 위하여 중재판정부가 정하는 기간은 45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서면을 제출하는 당사자는 그 당사자가 주장의 근거로 삼는 서류로서, 이전에 제출되지 않은 주요 문서의 사본(특히 양이 많은 경우에는 그 목록)과 관련 견본 및 서증을 첨부하여 상대방 당사자와 중재판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 신청, 답변 및 반대신청의 변경

---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절차의 지연, 상대방 당사자의 권리 침해 또는 기타 사유를 이유로 하여 수정이나 보완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절차 진행 중에 신청, 반대신청 또는 답변을 변경하거나 보완하고 이를 상대방 당사자와 사무국에 통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변경이나 보완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신청이나 반대신청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수 없다.

### 제18조 중재지

---

①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지는 서울로 한다. 다만 중재판정부가 당해 사안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장소가 더 적합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중재판정부는 심리 및 기타 회의를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떤 장소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③ 중재판정부의 합의는 스스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느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

### 제19조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신청

---

① 중재판정부는 중재조항 또는 별도의 중재합의의 존부 및 유효성에 관한 이의를 포함하여,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을 가진다.

② 중재판정부는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계약의 존부나 유효성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중재조항은 계약의 다른 부분과는 독립된 합의로 취급한다. 중재판정부가 당해 계약이 무효라고 결정하였다고 하여 중재조항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③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 규칙 제9조에 따라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반대신청의 경우에는 반대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기하여야 한다.

④ 일반적으로 중재판정부는 관할권에 대한 이의신청을 선결문제로 판단하여야 하나, 중재절차를 진행한 후 최종판정에서 판단할 수도 있다.

#### 제20조 중재의 진행

---

① 이 규칙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들은 중재절차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②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부여하며 사안에 관하여 진술할 공평한 권리를 부여하는 한, 이 규칙에 따라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중재판정부는 절차를 분리하거나 당사자들로 하여금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결과 관련된 쟁점에 대하여만 논의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 제21조 절차에 관한 규칙

---

중재판정부는 이 규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이 규칙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정한 규칙에 의하며, 그러한 규칙도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정한 규칙에 의한다. 이 규정은 중재에 적용될 특정 국가의 절차법을 참조하는 것과 상관없이 적용된다.

#### 제22조 증거

---

① 당사자들이 달리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절차진행 중 언제라도 당사자들에게 다음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문서, 서증 또는 필요, 적절하다고 보는 기타 증거의 제출
2. 당사자들의 지배 하에 있고 중재의 대상과 관련이 있는 재산, 장소, 기타 물건에 대한 중재판정부, 다른 당사자, 또는 전문가의 조사 허용

②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가 자신의 신청, 반대신청, 답변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 및 기타 증거의 요약본을 중재판정부와 상대방 당사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각 당사자는 신청, 반대신청, 항변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④ 중재판정부는 증거의 증거능력, 관련성 및 증명력에 관하여 판단할 권한을 가진다.

#### 제23조 전문가

---

① 중재판정부는 1인 또는 수인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중재판정부가 결정하고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특정 쟁점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가에게 위임할 사항은 중재판정부가 정하고, 당사자들에게 그 사본을 전달하여야 한다.

② 중재판정부는 전문가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서류, 동산 또는 기타 재산을 전문가가 조사할 수 있게 하도록 당사자에게 명할 수 있다.

③ 중재판정부는 전문가의 보고서 수령 후 그 사본을 모든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당사자들이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전문가가 그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근거로 삼은 모든 서류를 검토할 수 있다.

#### 제24조 중재 언어

---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을 때에는 중재판정부는 계약 언어를 비롯한 모든 관련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중재 언어를 결정한다.

#### 제25조 준거법

---

① 당사자는 분쟁의 본안에 관하여 중재판정부가 적용할 실체법 및 법원칙에 대하여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다.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실체법이나 법원칙을 적용한다.

② 모든 사안에 있어서 중재판정부는 계약 조항 및 관련 거래관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 한하여, 선의의 중재인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형평과 선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 제26조 심 리

---

① 심리가 열릴 경우 중재판정부는 적절한 통지를 함으로써 중재판정부가 정한 일시와 장소에 당사자들이 출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재판정부는 심리를 전적으로 관장하며 모든 당사자는 심리에 참석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 및 당사자의 승인이 없으면 해당 중재절차와 무관한 사람은 심리에 참석할 수 없다.

③ 당사자는 본인이 직접 또는 적법하게 수권된 대리인을 통하여 참석할 수 있다. 당사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심리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한다. 중재판정부는 증인의 증언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증인의 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증인신문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⑤ 사무국은 중재판정부 또는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녹음이나 통역, 속기록 작성, 심리를 위한 공간, 기타 중재절차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의 경비부담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제27조 절차의 종료

---

①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진술할 적절한 기회를 부여 받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절차의 종료를 선언하여야 한다. 절차 종료 이후에는, 중재판정부가 요청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 서면이나 주장,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

② 중재판정부는 판정 전에는 언제든지 재량에 따라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 제28조 보전 및 임시적 처분

---

①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관련서류를 수령하는 즉시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보전 및 임시적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적절한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그러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이유를 기재한 명령 또는 판정 등의 형식으로 한다.

② 중재판정부가 관련서류를 수령하기 전에 또한 적절한 상황에서는 그 이후에도, 당사자는 관할법원에 임시조치 또는 보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그러한 조치를 신청하거나 중재판정부가 명한 조치의 집행을 신청하더라도 중재합의 위반이나 권리포기로 간주되지 않으며, 중재판정부가 보유한 해당 권한도 유지된다. 그러한 신청의 제기 및 법원이 이에 대해 취한 모든 조치는 지체 없이 사무국에 통지되어야 하며 사무국은 이를 중재판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29조 의무의 해태

---

① 피신청인이 충분한 이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중재판정부가 정한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절차의 속행을 명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적법하게 심리에의 출석을 요청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중재판정부는 심리를 진행할 권한을 가진다.

③ 당사자가 서면증거의 제출을 적법하게 요청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거하여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판 정

### 제30조 의사 결정

---

중재인이 복수이고 특정 쟁점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판정 또는 결정은 중재인 과반수의 결의에 따른다. 그러한 결의가 성립되지 않는 쟁점에 대해서는 의장 중재인의 결정에 따른다.

### 제31조 판정의 형식과 효력

---

① 판정은 서면으로 한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판정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중재판정문에는 판정일자를 기재하고, 중재판

정부 전원이 서명한다. 과반수에 미달하는 일부 중재인이 중재판정문에 서명하기를 거부하거나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중재인이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중재판정은 중재지에서 중재판정문에 기재된 일자에 내려진 것으로 본다.

③ 모든 판정은 중국적이며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당사자들은 판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제32조 잠정판정, 중간판정 및 일부판정

---

① 중재판정부는 중국판정뿐만 아니라 잠정판정, 중간판정 또는 일부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② 일부판정의 경우 중재판정부는 상이한 쟁점에 관하여 그 시점을 달리하여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이 규칙 제36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정정될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일부판정도 판정 즉시 개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 제33조 중국판정의 기한

---

① 모든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최종서면의 제출일과 심리의 종결일 중 나중의 날짜로부터 45일 이내에 판정을 내려야 한다.

② 사무국은 중재판정부의 이유 있는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중국판정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34조 화해중재판정

---

이 규칙에 따라 중재신청이 접수되고 예납금이 납입된 후에 당사자들이 화해에 이르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일방의 요청에 따라 화해내용을 기재한 화해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당사자들이 화해중재판정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렀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중재판정부의 임무는 종료되며 중재절차는 종결된다. 다만 당사자들은 미납된 중재비용을 납입하여야 한다.

#### 제35조 판정의 통지, 기탁 및 집행성

---

① 판정이 내려지고, 당사자들 또는 당사자 일방이 중재비용 전액을 사무국에 납입한 경우에 사무국은 중재판정부가 서명한 중재판정문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이 통지 이후에 당사자들은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또는 기탁을 요구할 권리를 상실한다.

② 중재판정부와 사무국은 중재판정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형식성을 구비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36조 판정의 정정 및 해석

---

① 중재판정부는 판정 후 30일 이내에 중재판정문의 오기, 오산, 오타 등의 오류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②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는 중재판정문의 수령 후 30일 이내에 사무국에 통지함으로써 중재판정부에 제1항의 오류 정정이나 판정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정정이나 해석은 그 요청의 수령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정정이나 해석은 판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 제37조 추가판정

---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는 중재판정의 수령 후 30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통지와 함께 사무국에 대한 통지로서, 중재절차에서 제기하였으나 판정에서 판단되지 않은 청구에 대한 추가판정을 중재판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그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추가판정을 내려야 한다.

## 비 용

#### 제38조 중재비용의 납입의무

---

① 중재비용은 “신청요금과 관리요금에 관한 규정(별표 I)”과 “중재인의 수당과 비용에 관한 규정(별표 II)”에 따른 신청요금, 관리요금, 중재인의 수

당과 경비 및 중재절차 중에 발생하는 기타 경비로 구성된다.

② 당사자들은 연대하여 사무국에 중재비용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 제17조에 따라 청구가 변경되어 중재비용이 감액되는 경우에도 관리요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 제39조 중재비용의 예납

---

① 당사자들은 절차 중에 발생하는 중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무국이 정한 방식과 기간에 따라 사무국이 정한 예납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예납금은 중재절차 중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예납금 또는 추가 예납금의 금액을 결정한다. 사무국은 각 당사자에게 예납금으로 일정한 액을 예치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예납금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균분하여 납입한다. 납입은 현금으로 한다.

③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수인인 경우, 그러한 수인의 당사자는 해당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모두를 위하여 연대하여 예납할 책임을 진다. 그 비용은 해당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균분하여 납입한다.

④ 일방 당사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예납을 하지 않는 경우, 사무국은 중재판정부와 협의 후 중재절차의 중지 또는 종료를 명할 수 있다.

⑤ 일방 당사자가 예납금 중 자신의 부담부분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예납금 전액

을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액을 납입한 당사자는 잠정판정, 중간판정 또는 일부판정을 통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부담부분을 지급할 것을 명하도록 중재판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

⑥ 사무국은 중재절차 종료 후, 예납금을 정산하여 이를 납입한 당사자에게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⑦ 예납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40조 중재비용의 분담

---

① 관리요금을 포함한 중재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사건의 정황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그러한 비용을 당사자 사이에 분담시킬 수 있다.

② 중재판정부는 판정을 내릴 때에 중재비용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잠정판정, 중간판정 및 일부판정의 경우에는 비용에 관한 결정을 종국판정시까지 연기할 수 있다.

#### 제41조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

---

변호사비용이나 전문가, 통역, 증인을 위한 비용 등 중재절차 중 당사자가 부담하는 필요비용은 중재판정에서 중재판정부가 결정하는 분담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한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그 사안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절차 중 발생한 필요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한다.

## 기 타

### 제42조 기한의 변경

---

당사자들은 서면합의로 이 규칙에서 규정한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판정기한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한 모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사무국을 통하여 기한의 연장과 그 이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3조 포 기

---

이 규칙의 규정, 중재합의, 중재절차에 적용되는 다른 규칙 또는 중재판정부의 지시가 준수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그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절차를 계속 진행한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44조 면 책

---

중재인과 사무국 임직원은 이 규칙에 따라 진행된 중재와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45조 비밀유지

---

- ① 중재절차 및 그 기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중재인, 사무국 임직원, 당사자 그리고 그 대리인과 보조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되거나 법률상 또는 소송절차에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사건과 관련된 사실 또는 중재절차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부 칙

① 이 규칙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중재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중재원 중재규칙에 따라 진행한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이후의 절차를 이 규칙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당사자들 사이에 이러한 합의가 있는 경우 중재원 중재규칙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절차는 유효하다.

## 별표 I 신청요금과 관리요금에 관한 규정

### 제 1 조 신청요금

- ① 신청인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신청요금으로 100만원을 납입하여야 한다.
- ② 신청인이 신청요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중재원은 중재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 ③ 신청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④ 전항의 규정들은 반대신청에도 적용된다.

### 제 2 조 관리요금

- ① 당사자는 아래 표와 같이 신청금액에 따른 관리요금을 사무국에 예납하여야 한다.

단계	신청금액(원)	관리요금(원)
I	10,000,000 이하	2%(최저 5만원)
II	10,000,000 초과 50,000,000 이하	200,000 + (신청금액 - 10,000,000) * 1.5%
III	50,000,000 초과 100,000,000 이하	800,000 + (신청금액 - 50,000,000) * 1.0%
IV	100,000,000 초과 5,000,000,000 이하	1,300,000 + (신청금액 - 100,000,000) x 0.5%
V	5,000,000,000 초과 10,000,000,000 이하	25,800,000 + (신청금액 - 5,000,000,000) x 0.25%
VI	10,000,000,000 초과	38,300,000 + (신청금액 - 10,000,000,000) x 0.2%
VII	금액 없는 경우	3,000,000

② 신청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신청금액과 반대신청금액은 합산한다.
2. 이자에 대한 신청금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이자 신청금액이 원금 신청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자 신청금액만을 분쟁금액 산정에 고려한다.
3. 신청금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중재판정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사건이 해결되거나 철회되는 경우, 사무국은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요금의 일부를 반환한다.

## 별표 II 중재인의 수당과 경비에 관한 규정

### 제 1 조 중재인의 수당

①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중재인 수당의 기본금액은 중재시간에 시간당 요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한다. 시간당 요율은 시간당 미화 250불에서 미화 500불의 범위 내에서 사무국이 결정한다. 사무국이 시간당 요율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분쟁의 성격과 분쟁금액
2. 중재인의 지위와 경험

② “중재시간”은 심리에 소요된 시간과 중재절차와 관련 문제의 준비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③ 중재인의 수당은 아래 표의 최소액과 최대액 사이에서 결정된다.

	신청금액(원)	중재인 수당(원)	
		최소	최대
I	50,000,000 이하	1,000,000	2,000,000
II	50,000,000 초과 100,000,000 이하	1,000,000 + 2% × (신청금액-50,000,000)	2,000,000 + 5% × (신청금액-50,000,000)
III	100,000,000 초과 500,000,000 이하	2,000,000 + 1% × (신청금액 -100,000,000)	4,500,000 + 3% × (신청금액-100,000,000)
IV	500,000,000 초과 1,000,000,000 이하	6,000,000 + 0.75% × (신청금액-500,000,000)	16,500,000 + 2.8% × (신청금액-500,000,000)
V	1,000,000,000 초과 5,000,000,000 이하	9,750,000 + 0.25% × (신청금액-1,000,000,000)	30,500,000 + 1% × (신청금액-1,000,000,000)
VI	5,000,000,000 초과 10,000,000,000 이하	19,750,000 + 0.1% × (신청금액-5,000,000,000)	70,500,000 + 0.2% × (신청금액-5,000,000,000)
VII	10,000,000,000 초과 50,000,000,000 이하	24,750,000 + 0.05% × (신청금액-10,000,000,000)	80,500,000 + 0.1% × (신청금액-10,000,000,000)
VIII	50,000,000,000 초과	44,750,000 + 0.02% × (신청금액-50,000,000,000)	120,500,000 + 0.07% × (신청금액-50,000,000,000)

중재인 수당은 최대 1억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④ 분쟁금액의 산정 시에는 별표I 제2조 2항을 준용한다.

⑤ 중국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사건이 해결되거나

철회되는 경우, 사무국은 내부규정에 따라 중재인 수당을 지급한다.

## 제 2 조 중재인의 경비

---

중재인의 경비는 여행, 숙박, 식사 그리고 기타 경비를 포함하여 중재절차에 필요한 한도에서 발생한 실제 경비를 의미한다. 중재인의 경비는 절차 중에 발생하는 필요비로 정의된다.



仲裁規則 國文 單行本

2007年 2月 1日 印刷

2007年 2月 9日 發行

發行人：朴 三 圭

發行處：社團法人 大韓商事仲裁院

서울 江南區 三成洞 159(貿易會館 43層)

代表電話：(02) 551-2000

팩 스：(02) 551-2020

홈페이지：www.kcab.or.kr

印刷處：보명☎ 2274-4545)